

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

(일반병의원 · 한의원 공통)

(앞쪽)

1. 기본사항

① 사업자등록번호			② 상호			③ 성명		
④ 생년월일					⑤ 병과		⑥ 업종코드	
사업장 시설	⑦ 진료실 ()㎡		인원 현황		⑫ 고용의사 ()명			
	⑧ 수술실 ()㎡				⑬ 외래의사 ()명			
	⑨ 병실 ()㎡	⑩ 병상 ()개			⑭ 간호사 ()명			
	⑪ 대기실 ()㎡ 외				⑮ 기타 ()명			

2.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(단위 : 원)

구분	해당 과세기간								② 그 밖의 수입
	①⑥ 합계	①⑦ 비보험	①⑧ 건강보험		①⑨ 손해보험 · 공제조합 등	①⑩ 의료급여		①⑪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	
			본인 부담금	공단 부담금		본인 부담금	공단 부담금		
②③ 합계 (②④-②⑤ + ②⑥)									
②④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									
②⑤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									
②⑥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									

3. 의약품(한약재) 등 사용검토 (단위 : 원)

구분	②⑦ 전기이월 액	해당 과세기간		③① 차기이월액
		②⑧ 매입액	②⑨ 사용액	
③① 치료의약품				
③② 의료소모품				

4. 마취제 취급량 (단위 : 원, ml)

종 류	전기이월		해당 과세기간				차기이월		
			매입금액		③⑦ 마취건수 (건)	사용(지급)금액			
	③③ 용량	③④ 금액	③⑤ 용량	③⑥ 금액			③⑧ 용량	③⑨ 금액	④① 용량
④③ 국부마취제									
④④ 전신마취제									
④⑤ 출장마취									

()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약품 등 사용액을 신고합니다.

년

월

일

사업자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※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,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작성대상 :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2. 기본사항
 - 가.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종사인원 현황을 작성합니다.
 - 나. 사업장시설은 그 면적(㎡)을 적되, 병상은 그 수를 적습니다.
 - 다. 한의원의 경우 ⑫ 고용의사란에는 “한의사”를, ⑬ 외래의사란에는 “약제사”를 각각 적습니다.
3.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: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비보험, 건강보험, 손해보험·공제조합, 의료급여, 그 밖의 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으며, 정산내역별 수입금액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가. ⑰ 비보험란: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(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)으로 작성합니다.
 - 나. ⑱ 건강보험란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 「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」를 참고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 - 다. ⑲ 손해보험·공제조합 등란: 손해보험·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(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)으로 작성합니다.
 - 라. ⑳ 의료급여란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하는 내역을 참고하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 - 마. ㉑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란: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.
 - 바. ㉒ 그 밖의 수입란: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수령한 각종 보조금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사. ㉔ 해당 과세기간 수령금액란: 「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」에 따른 본인부담금 합계액 및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습니다.
 - 아. ㉕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란: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(본인부담금 합계액 및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말합니다)을 적습니다.
 - 자. ㉖ 해당 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란: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 합계액 및 당기에 수령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.
4. 의약품(한약제) 등 사용검토의 ㉑치료의약품란: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(마취제를 포함합니다)의 가액을 적고, 그 중에 특히 마취제에 대해서도 ㉔및 ㉕란에 별도로 적습니다.